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64 발의연월일: 2025. 4. 28.

발 의 자: 박정하·최보윤·김상훈

박상웅 • 서일준 • 엄태영

정동만 • 이인선 • 박덕흠

한지아 · 신성범 · 김재섭

김용태 · 조은희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,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임.

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 기업,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,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특례가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 장하려는 것임(안 제80조의2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·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6년"을 각각 "2031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80조의2(기회발전특구로의 제80조의2(기회발전특구로의 0 전 등에 대한 감면) ① -----전 등에 대한 감면) ① 「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(이하 이 조에서 "기회발전특구"라 한다)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. 1.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 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 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 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 년간 재산세를 면제(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를 면 제하며, 그 다음 2년간은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)한

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정한다.

가. • 나. (생 략)

- 2. (생략)
- ② 수도권(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)에 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 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 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 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 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. 이 경우 이 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, 업종, 규 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1.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
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
 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
 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
 을 경감하고, 과세기준일 현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2. (현행과 같음)
②
1
<u>2031년</u>

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.

가. ~ 라. (생 략) 2. (생 략)

③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 ·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. 이 경우 공장의 범위, 업종, 요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1.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 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 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하고, 과세기준일 현 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 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 세의 100분의 75(수도권 지역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2. (현행과 같음)
③
1
00011
<u>2031년</u>

에 있	는 기호	회발전	년특구.	의 :	경우	-
에는	100분	의 3	35)를	경	감힌	<u> </u> -
다. ㄷ	ㅏ만, ㄷ	음 2	각 목	의 여	어느	-
하나이	네 해당	하는	경우	감기	면 힌	ļ-
취득서	네 및	재산	·세를	추	징 힌	<u> </u>
다.						
가. ~	~ 다.	(생	략)			
2. (생	략)					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